

의안번호	제450호
의결연월일	2018. 1. 8

-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. 12. 29 예산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18. 1. 2

다. 상 정 일 자 : 2018. 1. 8

제237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행정복지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[기획실장 : 홍석모]

가. 제안이유

- 군정성과와 군민들이 알아야할 내용으로 매월 발행하여 군민과 출향인사에게 배부하는 예산소식지에 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고 참여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소식지 참여자 보상규정 신설
 - 소식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문제풀이에 응모하여 당첨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품(유가증권 포함)을 지급할 수 있다. (안 제12조 제6항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임호빈)

○ 이 조례안은 예산군 소식지 독자참여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군 홍보 효과를 제고시키고자, 소식지 문제 풀이에 응모하여 당첨된 자에게 경품(유가증권 포함)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요지

○ 생략

5. 토론요지

○ 생략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